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507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5075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1가단22118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C

변론종결 2022. 4. 19.

판결 선고 2022. 5. 13.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1가단22118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2021. 2. 2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5,675,55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75,5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의 "어렵다" 다음에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흔하다.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부산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가단339623 판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우인성

판사박성규

판사신한미

별지